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제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posal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노 영 희 (Younghee Noh)*

노 지 윤 (Ji-Yoon Ro)**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제안 |
| II. 법률 관련 장서개발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 IV. 결론 및 제언 |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크게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과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법률장서, 법률장서개발, 법률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at home and abroad, established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and proposed details of the library's library development policy. In this study, the vision of the supreme court library was established as an open legal and judicial information center that provides services to the public at the eyes of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a representative law library that focuses The five basic directions for establishing a book development policy to realize this vision are as follows: 1) Book development centered on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a national representative legal library, 2) Development of books as an open legal/judicial information center for public service, 3) The development of books in line with the changing times and information environment, 4) Development of books by subject and languag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t library, 5) Development of a collection, preservation, and disposal of data based on consistency and systematicity. It is expected that systematic or strategic book development can be promot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books in the court library based on policy documents.

KEYWORDS: Supreme Court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Legal Books, Legal Collection Development, Law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박사후연구원(rojylv@gmail.com / ISNI 0000 0004 7859 8321)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1년 11월 22일 • 초심사: 2021년 12월 1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27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4), 55-78, 2021. <http://dx.doi.org/10.16981/kliss.52.4.202112.55>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법원도서관은 최고의 법률 분야 전문도서관으로서 청사 이전 및 법마루 개관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서 다양한 특별법 분야의 출현, 영미·독일·일본 외 다양한 언어권의 법령과 판례에 대한 참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서관 역시 재판사무의 지원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도서관의 핵심역량은 누적성, 체계성, 보존성, 적시성,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장서개발에서 발원한다(장덕현, 이연옥, 윤희운, 2014). 따라서 법마루 개관으로 대국민서비스 기회가 확대된 시점에서 법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장서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비대면 특성으로 전자책과 오디오 북 등의 이용 증가와 유튜브 등의 영상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을 고려하여 볼 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첨단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정보서비스와 프로그램이 고려된 장서개발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서개발, 관리가 성문화된 정책에 입각하지 않으면 논리적 체계성과 현실적 최적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중장기 측면에서도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장서개발은 객관적 장서평가를 통한 피드백이 불가능하다(장덕현, 이연옥, 윤희운,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정당화하는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정보서비스의 전문성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한다.

기존에 장서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도서관의 유형 및 관중에 적합한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 현황과 과제, 정책모형 등이 연구되고 있다(강은영, 2014; 박철완, 2015; 윤희운, 2009; 장덕현, 이연옥, 윤희운, 2014). 또한,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장서개발 정책 또는 전문자료, 전자책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요소와 방법·전략, 개발정책 동향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윤희운, 2007; 이선희, 유수현, 2008; 장덕현, 서태설, 2009). 특히, 전문자료, 전자책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는 관중별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박희숙, 2004; 송이, 2012; 장일경, 2000). 그 외에도 장서개발관리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분석(신유미, 박옥남, 2019)하거나 장서개발에 있어서 발생하는 지적자유의 문제(장덕현, 2011)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일반이용자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

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통해 법학 관련 도서관 등이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인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들의 동향과 변화하는 법조 환경에 부합하는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주요 법학 관련 장서개발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국회도서관, 헌법재판소도서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도서관을, 국외의 경우 미국 의회도서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도서관, 호주 빅토리아 법률도서관, 멜버른 로스쿨 법률도서관 등의 법원도서관 사례를 조사하여 각각의 장서개발정책 구성체계 및 내용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문헌연구와 법률 관련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규정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의 기본원칙과 개발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자료를 중심으로 장서개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Ⅱ. 법률 관련 장서개발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일반이용자를 책임지는 국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해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제안에 앞서 국내·외 국가도서관과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국내 사례

가. 국회도서관의 장서정책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정보와 국민을 위한 지식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회와 국민에게 최상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도서관이자 국가도서관이다. 장서개발정책은 국회도서관의 이용자인 국회와 국민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서개발을 실현하고자, 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에 대한 기본지침과 세부지침, 장서관리지침, 본관과 자료보존관의 유기적인 장서개발을 성문화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국회도서관의 장서는 대한민국의 지적문화유산을 중장기적으로 보존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와 지성을 전승하는 중대한 지적 실체이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국회와 국민의 정보요구를 충족하는 장서개발의 실현, 일관성 있는 자료 수집·보존·폐기의 명문화를 통해 체계적인 장서구성의 도모,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을 제시 등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이러한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의 대상은 「국회도서관법」 제2조(직무)에 명시된 도서관자료, 전자도서관 구축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7조(도서관자료의 납본 등)에 명시된 납본자료를 근거로 그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의 중점분야는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도서관 기능 수행에 관련된 자료를 우선하며, 이를 핵심자료와 특성화자료로 구분한다. 이처럼 국회도서관 자료수집의 분야에 해당하는 입법자료와 특성화자료는 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서개발정책이 마련되어 있다(〈표 1〉 참조).

〈표 1〉 국회도서관의 장서정책

| 입법자료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자료는 국회도서관이 의회도서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핵심자료로 국내외에서 발간·생산된 의회자료, 법률자료 및 공공정책자료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자료의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자료를 포함하며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함 - 입법자료는 자료의 최신성과 주제별 균형성, 정보이용자의 요구 및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이슈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균형 있게 수집함 - 국내 입법자료는 구입, 수증, 방문수집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며,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료는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의 납본조항에 근거하여 망라적으로 수집함 - 국내 납본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본 협조 요청을 시행하며, 미제출기관 및 미제출자료를 발굴하여 요청함 - 국외 입법자료는 구입, 국제교환, 수증, 기탁에 의해 수집함 - 국가별 또는 발행기관별로 입수되는 자료 수의 편차가 크므로 국제 정세 및 자료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수집함 (1) 의회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자료는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발간되거나, 의회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자료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자료에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의회회의록 및 관련자료, 의회관련 기관의 입법지원 연구자료, 지방의회 회의록 및 의정백서, 의회관련 정기간행물 및 기타 비도서자료 등이 포함 - 상임·특별위원회 및 소관부처의 발간자료, 국회의원실의 의정보고서, 정책자료집, 의원저서 등 의회 발간자료는 입법부의 역사적 활동을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망라적으로 수집 - 의회 발간자료 중에는 발간등록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되는 자료들이 존재하여 적기에 수집하지 않으면 수집하기 힘든 자료들이 많으므로, 주기적인 발간정보 파악과 기증의뢰, 방문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 (2) 법률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료는 법률의 제정(입법자료), 집행(규정, 결정자료), 해석 및 재판(판결자료) 과정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법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가 되는 모든 관련 자료를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자료는 원칙적으로 납본제도를 활용하여 모든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함. 단, 예외적으로 이용대상자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수집에서 제외함 - 입법관련기관에서 요청하거나 활용된 자료 및 연구자의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료는 적극적으로 구입하여 수집함 - 입법 및 의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의 1차 법률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내 납본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납본 협조 요청을 시행하며, 미제출기관 및 미제출자료를 발굴하여 요청함 |

- 정책적으로 지칭하는 주요국가의 법률자료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모두를 수집하고, 그 외의 국가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함
 - 미국, 일본 중심의 외국 법률자료 수집에서 수집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다양한 국가의 법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3) 공공정책자료
- 공공정책자료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이 국민 다수나 국가 미래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 전 분야의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산, 유통시키는 정보자료로, 국내외 정부간행물 및 연구기관 발간자료, 국제기구자료를 말함
 - 국내 및 국외의 주요국 정부간행물, 국내외 연구기관 발간자료, 국제 기구자료를 유형과 매체에 관계없이 망라적으로 수집함
 - 공공정책자료의 속성상 자료의 신속한 수집 및 제공에 유의함
 - 납본, 구입, 국제교환, 수증, 기탁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수집함
 - 주요국은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을 기본으로 하되, 언어별 우선순위(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및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하여 대상 국가를 선정할 수 있음
 - 국외 정부간행물 및 국제기구자료의 전자화 경향에 따라 인터넷상의 새로운 정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함

특성화자료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

- 특성화 자료는 국회도서관의 특화된 컬렉션으로 독도자료, 통일자료, 영토자료를 말함
 - 특성화자료는 시대적 입법의제 및 현안 등을 고려하여 추후 수집 대상을 추가할 수 있음
 - 특성화자료의 수집대상은 모든 유형과 매체로 발간·생산된 국내외 자료를 대상으로 함
 - 납본, 수증은 물론 구입 등 적극적인 수집방법을 통해 관련 입법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함
- (1) 독도자료
- 독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말함
 - 독도관련 국내외 연구문헌과 지도, 세미나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독도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특히, 입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본의 독도연구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수집
- (2) 통일자료
- 남북한 통일을 위한 입법 및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남북한 통일 관련 자료 및 외국의 통일 관련 자료,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 (특수자료 및 비밀자료 포함)를 말함
 -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입법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북한 및 통일 관련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북한에서 출판한 자료는 그 형태나 발행연도, 내용수준을 불문하고 망라적으로 수집함. 특히 북한의 정치체제, 경제, 사회문화, 지리 등 한국과 밀접히 관련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
 - 북한에서 출판한 자료는 50페이지 미만의 자료나 만화, 교과서 등 국회도서관 수집제의 자료도 수집대상으로 함
 - 국외자료 중 독일, 예멘, 베트남 등 통일국가에 관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
 - 통일자료 중 특수자료와 비밀자료는 「국회보안업무규정」과 「국회 도서관 특수자료 취급내규」의 규정에 준해 수집 및 관리
- (3) 영토자료
- 일정한 영토의 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분쟁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자료를 말함
 - 동북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다룬 국내외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
 - 언어별 수집범위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중심으로 수집함. 다만,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등 기타어도 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집
 - 구입, 수증, 국제교환을 통한 수집 외에도 중국, 일본 등 현지 출장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수집

나.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장서정책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헌법재판소 도서실 설치(헌법재판소 보조기구에 관한 규칙, 1988)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현재는 국내 최대의 공법전문도서관으로서 헌법재판 및 심판사건 연구·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부터 법률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국민 누구나 법률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서관은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료의 적시 수집과 제공을 통한 심판사건 연구업무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장서정책의 경우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연구자료, 주요국 법령 및 판례자료, 정기간행물 등 전문 법률자료 구입, 유관기관 발간자료, 학회지, 세미나자료 등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발간하는 자료 수집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국내외 법률정보 WEB-DB의 구독 및 관리, 주요국 헌법정보 및 법률분야 저자정보 등 전자콘텐츠 구축,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 평석정보 등 전자법률정보 수집 및 연계 등이다.

다.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의 장서정책

우리나라 최초의 법학전문도서관으로서 대학 구성원을 위한 광범위한 주제 영역을 다루며 특정 주제나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깊은 연구보다는 일반화된 목적에 필요한 주제 지식을 다룬다.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분관의 운영은 행정상으로는 중앙도서관과 무관하지만 분관의 자료 수집, 정리 업무 또는 예산에 있어 중앙도서관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중앙도서관에서 분관 예산 배정과 함께 법학도서관은 연구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고유 업무인 수서 정리, 열람, 이용 봉사까지 수행하게 된다. 자료실은 대부분 개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폐가제로 운영되는 일부 자료는 필요에 따라 허가를 얻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법학전문 WEB DB와 e-journal 및 e-book 등이 함께 구독되고 있다.

〈표 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자료 구성 규정

| 제3장 | 자료의 구성 및 정리 | 내용 |
|------|------------------|--|
| 제6조 | 자료의 구성 원칙 | ① 자료의 구성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의 달성과 학술연구 및 학습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장자료 중 특히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는 귀중자료로 지정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 제7조 | 자료의 수집 및 구분 | ①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수증자료 3. 편입자료 4. 기타자료 ②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형자료 : 도서, 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 필름 등 시청각자료, 기타 무형전자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 2. 무형전자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
| 제8조 | 자료의 납본 | 법학전문대학원 및 관련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자료는 도서관에 2부를 납본하여야 한다. |
| 제9조 | 자료등록 | ① 유형자료는 자료원부에 소장사항을 기록하고 각 자료마다 등록번호, 장서인 및 바코드 등 소장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무형전자자료는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 모든 등록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0조 | 자료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의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
| 제11조 | 자료의 교환, 이관 및 폐기 | ① 관장은 소관자료를 상호교환, 이관 및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폐기기준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료를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척할 때는 관련 원부에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 |

2. 국외 사례

가. 미국 의회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The Library of Congress)은 1800년 4월 24일에 설립된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세계 최대의 장서를 자랑하는 도서관이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구입, 수증, 납본, 교환, 이관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주 수집 분야는 국립농업도서관(National Agricultural Library)과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담당하는 농업과 임상 의학을 제외한 모든 학문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역사, 사회과학, 문학류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다양한 고객의 지식정보 욕구 충족을 위한 최적의 장서 개발 지원을 위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 의회도서관은 의회와 연방정부기구가 그들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둘째, 미국 의회도서관은 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인물과 사회집단의 과거 및 현재를 기록한 유용한 형태의 원본이나 복사본의 전부 또는 대표작을 수집·축적해야 한다.

미국 의회도서관 장서정책선언의 주제영역구분을 통해 총 71개 주제(65개 주제 및 매체별 지침과 6개 부록 지침으로 구성)로 구분한다(〈표 3〉 참조). 각각의 지침은 일반적 범위, 연구를 위한 강점, 수집정책, 자료 수집처 등이 기술되어 있다.

〈표 3〉 미국 의회도서관의 장서정책선언의 주제영역 구분

| Collections Policy Statements | | | |
|-------------------------------|--------------------------|----------|--------------|
| 농업 | 단명자료 | 생명과학 | 물리학 |
| 인류학, 고고학, 민족학 | 민족관련자료 | 문학과 언어 | 정치학 |
| 생명공학 | 판타지, 과학소설 | 지역사 | 실리학 |
| 지도자료, 공간정보자료 | 미술, 응용미술(비도서) | 필사본 | 종교 |
| 화학 | 미술, 장식미술 (도서 및 연속간행물) | 수학 | 과학 일반 |
| 어린이 문학 | 민속학 | 의학 | 사회 및 단체 |
| 만화, 카툰 | 족보학 | 군사학 | 사회학 |
| 컴퓨터과학, 전자통신, 인공지능 | 총류 | 동영상자료 | 음반자료 및 라디오 |
| 요리, 영양, 식품공학 | 지리 및 지도제작 | 음악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
| 무용 | 정부간행물(외국) | 해양과학 | 규격 |
| 개발도상국 | 정부간행물(미국) | 신문(외국) | 기술보고서 |
| 학위논문 | 과학사, 기술사 | 신문(미국) | 기술공학 |
| 지구과학 | 영양, 식품(NAL, NLM과 공동수집) | 화폐, 우표 | 전호번호부와 도시명감 |
| 경제, 경영 | 국제조직 | 일반 정기간행물 | 극장 |
| 교육 | 법학 | 철학 | 번역 |
| 환경공학 | 문헌정보학, 서지학 | 사진 | 미국사 |
| 제향군인(참전용사) 역사 프로젝트 | | | |
| Supplementary Guidelines | | | |
| 북자켓 | 전자자원 | 회귀언어자료 | 마이크로자료 |
| 비도서과자료 | 웹 아카이빙 | - | - |

나. 호주 빅토리아 법률도서관

빅토리아 법률도서관(The Law Library of Victoria)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위한 법률 정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목표는 도서관의 최우선 순위인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컬렉션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 정책은 사법관, 법률 업무 종사자 및 지역 사회가 필요할 때 권위 있는 법률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법관과 법률 업무 종사자는 언제 어디서든 법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도서관은 법원 서비스 빅토리아(CSV), 관할권, 관계자 및 각각의 요구에 부응한다. 특히, 사법관과 법률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연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 구매를 우선시하며, 사법관과 법률 업무 종사자는 장서 수집 계획에 대한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컬렉션 관리 개선은 관할권 및 법률 업무 종사자의 의견에 따라 수집 정책에 대한 연간 검토, 디지털 및 출판된 장서 전반에 걸친 콘텐츠의 연간 검토 및 조달 과정 검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책의 범위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컬렉션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형식으로 구매한 출판물을 위한 것이며, 도서관 이용비를 지불한 모든 변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다. 디지털 대신 인쇄 형식의 출판물이 우선시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된 라이선스 계약이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Core 컬렉션의 타이틀에 대한 인쇄 형식은 동일한 자료에 대한 실습을 위해 도서관 이용비를 지불한 모든 변호사가 이후 5년 동안 혹은 그 이상으로 출판사와 합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액세스를 확보한 경우에만 중단된다. 특정 액세스 계약이 있는 특정 출판물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 계약의 일부로, 요청에 의해 자료를 구매하는 경우와 이러한 계약에 대한 구매 결정이 정책의 수집 지침보다 우선 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링크는 전자도서관에 포함되어 있다. 콘텐츠의 예시로서 빅토리아, Commonwealth 및 기타 모든 호주 주 및 지역의 법률은 도서관 웹 사이트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Commonwealth와 빅토리아 주의회의 토론회, 빅토리아 주정부의 관보(gazettes), 저널과 기타 법률 간행물, 법률 조직의 웹사이트 또는 출판물 등이 있다.

〈표 4〉 호주 빅토리아 법률도서관의 장서정책

| 장서지침 | |
|--|---|
| 핵심장서 | 예비장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토리아 및 기타 모든 호주 관할 구역 및 영국에 대한 공인 및 일반 법률 보고서 및 요약본 • 엄선된 주제를 다루는 모든 호주 관할 및 영국의 전문 법률 보고서 • 호주와 영국에서 다루는 법률 백과사전, 사전, 인용 및 색인 • 호주에서 발행되는 법률 저널과 엄선된 국제 저널 • 빅토리아에서 발행된 법률 관련 문서 • 빅토리아 법에 관한 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인되고 일반적인 법률 보고서와 캐나다, 뉴질랜드와 다른 관습법(jurisdictions)에 대한 digests • 뉴질랜드, 캐나다 및 미국을 다루는 법률 백과사전, 용어사전, 인용자와 인덱스 • Commonwealth와 주와 주 사이의 자료를 다루는 텍스트와 기타 국가들의 관습법 • 미국 자료는 위에 열거된 관습법(jurisdictions)에서 해당 내용을 폭 넓게 다루지 않은 경우에만 구입 |

| 특수 장서 | |
|---|--|
| 판단 | 판사 연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모든 권한권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판결문을 보관함. 허용되는 경우, 이러한 판결문은 도서관 웹 사이트를 통해 판결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 가능함 • 판결문은 AustLII, BARNET HADE 및 기타 빅토리아 법률보고 위원회의 대리 법률 출판사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환영사와 고별사를 소장하고 있음. 사서의 요청에 의해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함 |
| 희귀 도서와 고전장서 | 저명한 은퇴한 판사의 장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세기 고전 장서들은 대법원 도서관이 설립된 초기 몇 년 동안 수집되었으며 고전장서는 다양한 방면의 문서들과 고전 소설로 구성되어 있음. 고전장서는 Classics Room에 소장되어 있음. 장서에 대한 액세스는 도서관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도서관은 고전장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구매를 하지 않음. 하지만 기부는 받아들여질 수 있음. 장서는 역사의 목적으로 유지되며 도서관 목록에 포함됨 • 대법원 도서관은 또한 많은 다른 희귀하고 오래된 책들을 소장하고 있음. 이러한 항목에 대한 액세스는 근무 중인 참고사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은 저명한 은퇴한 판사들의 소수의 법률 서적들을 소장하고 있음 • 장서 통합은 빅토리아 법률도서관의 재량에 따름 |

다. 멜버른 로스쿨 법률도서관

법률도서관의 주요 이용자는 멜버른 로스쿨 연구원, 직원 및 학생이다. 또한 로스쿨의 학술 방문자, 직원 및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이용하며 대중에게 열려있다. 법률도서관의 목적은 멜버른 로스쿨의 학습 및 교육을 지원하고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서관의 장서는 모든 법적 학문을 다루며, 실무보다는 학문적인 자료를 주로 수집한다. 장서 종류는 주로 비교법, 법률 개혁, 공법, 법적 역사 및 법률 이론에 관한 자료가 많다. 가장 많이 다루는 권한권은 국제법, Australasia, 아시아-태평양 지역, 영국, 캐나다 및 미국이다. 도서관 자료는 보통 개별 구매, 승인 계획, 정기 주문 및 기부를 통해 수집되며, 전자자료 수집은 컨소시엄을 통한 협력 구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전자자료는 출판사로부터 '패키지', 즉 출판사의 전체 결과물을 나타내는 저널과 같은 전자자료 세트로도 수집한다. 장서 개발 정책의 목표는 최신 자료와 역사적 자료를 모두 요구하는 법학부의 교육 및 연구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로스쿨 중 하나인 교수진의 지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 멜버른 로스쿨 법률도서관의 장서정책

| 장서선택기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기준 - 적용 가능한 요소 : 수집 항목을 평가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률도서관에서 수집한 주제 영역 및 권한권과의 관련성 나) 기본 이용자(등록 된 법대생 및 로스쿨 연구원) 요구 사항 다) 자료의 품질 - 자료의 범위, 주제에 대한 연구 및 담론에 대한 자료 내용의 중요성, 자료 내 각주의 성격 및 범위, 자료의 접근성 (예 : 색인 생성), 평판 등 저자 및 / 또는 출판사 라) 교수진의 관심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 장서에서 부족한 부분 채우기 바) 가용성 사) 비용 아) 형식 자) 자료의 안정성 - 특히 온라인 콘텐츠 관련하여 차) 자료의 유용성 <p>• 장서 선택/수집 책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멜버른로스쿨의 펀딩을 사용하여 어떠한 장서 및 연간 지출에 대한 책임은 도서관 직원, Academic Research Service 및 멜버른로스쿨과 협의아래 법률도서관 사서에게 있음. 이 책임은 다른 도서관 직원에게 위임될 수 있음 나) 법률 사서 또는 대리인은 새로 출판된 법률 서적, 새로운 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출판사 '패키지' 및 기타 인쇄 및 전자 자료를 확인해야 함 다) 저널, 패키지, 데이터베이스 및 모든 대규모 일회성 구매에 대한 제안은 법률도서관 장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p>장서의 형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인쇄 또는 전자 자료에 중점 나) 전자 형식의 도서와 저널은 호환되는 사용, 액세스 및 형식 모델로 제공되는 경우 구매 다) 인쇄된 자료와 전자자료 중에 수집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신 버전 및 에디션 액세스 가능 여부 2) 자료를 소유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액세스를 얻는 것인지 3) 전자 자료 라이선스 계약 가능여부 라) 새로운 형식은 액세스의 편리성, 사용방법, 기존 사용법과의 호환 가능성 등을 고려 |
| <p>장서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은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으며, 그 기준은 CDM에 따름. 거의 예외 없이 장서의 원래 포맷일 필요는 없다하더라도 습득 자료를 보유하는데, 다만 몇몇 경우에 지침에 따라 자료들을 컬렉션에서 제거할 수 있음 • 제거의 방법은 철회, 추리기, 처분의 세 가지로 이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회의 기준은 주제와 범위, 퇴락이나 손상, 중요성이나 관련성 그리고 대표성임 - 추리기의 기준은 중복 사본들, 축적된 출판물들, 쓸모없거나 덜 바람직한 포맷들임 - 처분은 컬렉션으로부터 철회되거나 추려진 항목들을 적정 처분하는 물리적 과정인데, 가능하다면 철회되거나 추려진 자료가 더 적절히 배치될 국회도서관이나 여타 기관에 그 자료를 가용하게 하는 것을 선호함 |
| <p>오래된 인쇄 도서의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된 에디션의 최소 한 부를 포함한 오래된 책은 역사 연구 목적으로 보존되며 법률도서관 창고 또는 외부에 보관할 수 있음 |
| <p>폐기 및 제적 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서는 연중 비공식적으로 폐기되며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액세스가 있는 자료, 교과서의 대체 버전 및 지난 5년 동안 출판 활동이 없는 자료가 우선적으로 폐기됨 • 폐기 및 제적 과정에서 학자 및 대학원 연구원은 장서수집에 대한 의견을 줄 수 있음. 또한, 장서는 도서관 컬렉션 항목에서 액세스 해제 또는 멜버른대학도서관 정책 원칙에 따라 폐기되거나 다른 저장소로 옮겨질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하기로 결정된 자료는 자선 기부 계획을 위해 다른 도서관과 멜버른로스쿨 서비스에 제공됨 |

3.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사례 조사를 통해 각 도서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장서정책을 수립하고 세부지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개발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장서개발의 목적, 장서관리의 기본 원칙, 일반기준, 선정기준(단행본, 연속간행물, 전자자료, 특성화 장서, 자료선정 제외기준), 기준 자료 처리기준, 폐기 및 제적기준(주제 및 자료 유형별 폐기 지침 등), 장서평가지침(장서 다양성

평가, 이용자 평가, 이용률 평가 등), 장서개발업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는 자료의 구성 원칙, 자료의 수집 및 구분, 납본, 구입, 보존과 폐기 등이 포함된다. 이중에서도 국외 주요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는 대부분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등을 포함하는 서문, 주제별·매체별 장서개발정책, 지역별 해외자료개발 정책, 장서개발 수준 및 범위, 중장기 장서개발 계획, 전자자원 개발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을 성문화하여 장서수집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장서개발정책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주제 분야 장서 수집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연구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법학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과 강의 지원, 법률정보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주제 분야 위주의 장서를 주로 수집한다.

둘째, 기능 수행을 위한 특화자료 우선 집서 한다. 국회도서관,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 국가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성을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자료의 수집, 보존, 폐기의 명문화를 통해 장서개발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체계적 구성을 도모하며, 각 도서관은 관별 핵심 사명에 따른 기능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우선으로, 특화된 고유의 장서를 집서한다.

셋째, 장서개발전담조직 구성이다.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서관 내에 자료 선정위원회를 두어 장서개발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주제 분야별로 법학 장서의 균등한 장서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도서관들은 정보 환경의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화에 따른 유연한 장서개발정책 수립과 정기적인 갱신을 수행하고 있다.

다섯째, 별도의 법률자료 보관소 운영이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법원마다 법률도서관이 설치되어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도서관은 법원 자료 수집을 위한 별도의 보도자료 보관소 운영을 통해 전문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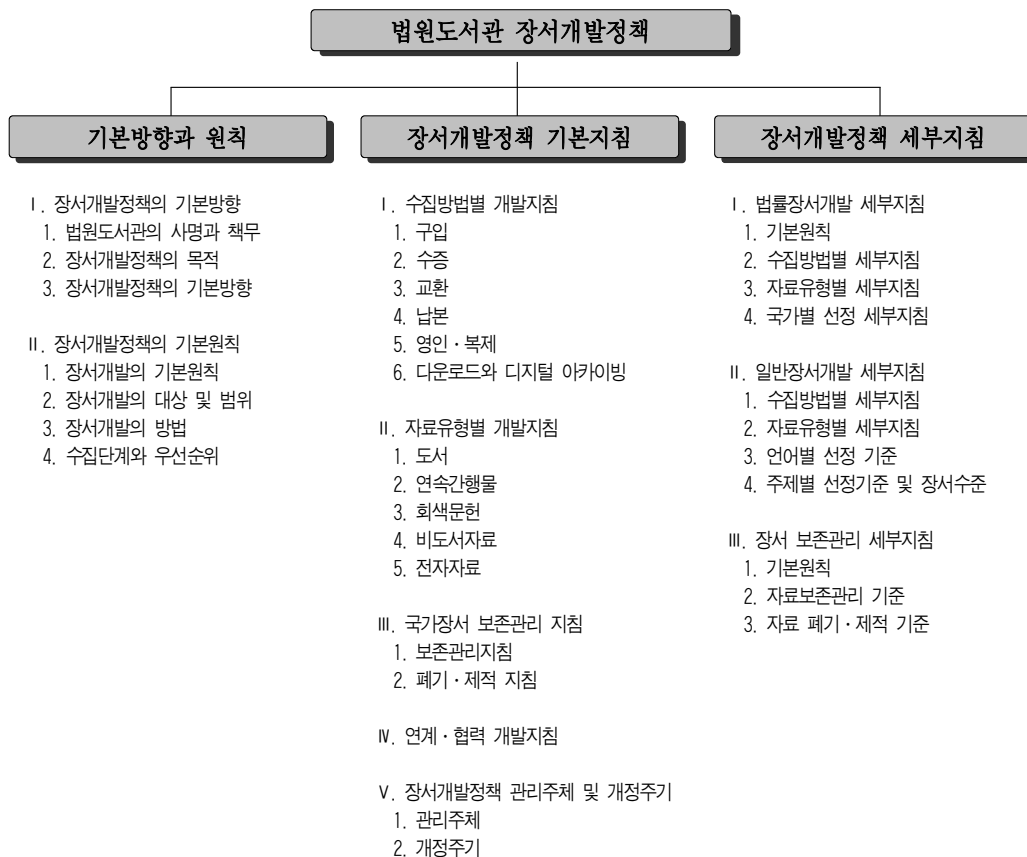
여섯째, 장서개발의 정교화이다. 정보자원의 지속적 증가와 다양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정보 접근과 활용 등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이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세부전략의 구체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의회도서관의 경우, 장서정책선언의 주제영역은 65개 영역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정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웹 아카이빙과 전자자원 등의 가이드라인 6개 영역이 부가적으로 갖추어져 있다. 또한, 영국국립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장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액세스 변환에 관한 권장 사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납본 대상에 포함되는 디지털 자료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디지털 납본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도서 외 다른 유형의 자료를 포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납본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내 이용 및 원격 접근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작권을 고려한 이용 가이드라인과 보존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Ⅲ.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제안

법원도서관은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현재의 장서수준 및 미래의 입수의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되, 빠른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한 사례 연구를 통대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제안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크게 ‘기본방향과 원칙’, ‘장서개발정책 기본지침’, 그리고 ‘장서개발정책 세부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그림 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

1.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 제안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안)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으로 구성된다. 기본방향에는 법원도서관 사명과 책무,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기본방향이 기술된다. 다음으로 기본원칙에는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장서개발의 대상 및 범위, 장서개발 방법, 수집단계와 우선순위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안)

I.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1. 법원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1989년에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법률정보의 확산 및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법마루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법문화 및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출현,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원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 열람·대출 위주의 서비스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법원 및 법학 분야에서 생성되고 있는 각종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법률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제고한다.

3.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가.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국내 최고 법률전문도서관이자 재판사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 이용자인 재판활동을 수행하는 판사,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의 이용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 이에 각종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법원도서관의 핵심적 사명에 적합한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 특히, 법마루는 대국민서비스의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장서뿐만 아니라 일반도서를 포괄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 시대 변화 및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다.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 포스트 코로나 등의 시대변화와, 첨단정보기술과 언택트 특성 등을 반영한 장서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자료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자료 개발정책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은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으로 나누고, 세부지침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갱신·유지해야 한다.

라.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 법원도서관은 국내 대표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망라적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장서수준 및 미래의 입수예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제별·언어별 장서수집수준을 정의하여 법원도서관의 장서 특성을 강조하고, 장서개발의 효율화를 기한다.

마.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

- 법원도서관의 장서를 일관성과 체계성의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로 진화시키기 위해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자료 수집·보존·폐기 업무의 확고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II.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1.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 법원도서관이 법률자료와 일반자료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 지침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원도서관의 모든 장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의 지식정보를 개발하여 문헌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요구 및 이용행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 ② 법원도서관 장서 개발 시에는 공정성, 공평성을 기반으로 사상과 이념, 정파와 정치적 성향, 종교와 신념, 인종과 국적, 신분과 직업 등의 편향성을 차단한다.
- ③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대표도서관이자 국가법률전문도서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자료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한편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법률문화 창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일반자료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 ④ 법원도서관이 법률자료를 개발할 때 외국 법률자료는 구입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선택-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⑤ 법원도서관이 개발할 법률자료의 매체별 유형은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디지털 파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자료예산의 한계, 접근·검색의 편의성, 입수·이용의 신속성 등을 감안하면 법률정보를 생산·유통시키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이 바람직하다.
- ⑥ 법원도서관이 미소장 과거자료를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구입, 수증요청, 복사·영인, 마이크로화, 디지털화 등)을 적용하되, 시대사조와 원격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디지털화 전략을 우선으로 한다.
- ⑦ 법원도서관의 법률자료 개발전략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률정보 수요도를 기반으로 법률 도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되 10개 주류(총류-역사) 중에서 사회과학(사회, 경제, 정치, 법률, 행정과 군사학, 사회복지, 교육, 상업과 무역), 과학기술, 예술, 문학, 역사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 ⑧ 법원도서관은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입과 수증, 복제와 영인, 다운로드 외에 법률정보 수집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교환 등의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 ⑨ 법원도서관의 대중용 일반자료 개발은 구입 및 수증수집에 주력하며, 외국자료는 선별적으로 구입한다.
- ⑩ 법원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된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근거로 법률자료 및 일반자료 수집에 주력하되, 각각의 세부지침을 구체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장서개발에 적용한다.
- ⑪ 법원도서관은 세부지침을 구체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각 열람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열람실 및 각급 법원 도서실은 재판사무지원 역할을, 법마루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함을 고려하여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서개발의 대상 및 범위

-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자원', '지식정보'는 호환적인 용어이며, '법률정보'와 '법률자료', '일반자료'와 '대중자료'는 각각 동의어로 간주하여 호환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 이를 전제로 장서개발 대상은 수집방법, 자료유형, 수록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로 나누어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수집방법별 개발은 국내 자료에 구입, 수증, 교환, 소급 법률자료에 복사·영인 제작, 외국 법률정보에 구입 및 라이선스 확보, 인터넷 정보자원에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 자료유형별 개발은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털 파일 등으로 구분하고 법마루 도서에 한하여 일반도서, 참고자료, 대중잡지(신문 포함), 시청각자료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 수록매체별 개발은 인쇄자료, 시청각 등 특수자료, 전자자료(상용 서지·원문 DB와 패키지형 전자잡지, 전자책, 디지털 파일)를 대상으로 한다.
-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은 법률정보에 국한하며, 전자는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한자권, 북한, 기타 등의 자료를, 후자는 국외 법무부, 대법원 및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국제기구, 대륙별 국가연합체, 주요 국제 민간기구,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단체·연구기관의 법률과 관련된 공공간행물, 보고서, 법령·통계자료, 학술대회자료, 박사논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주제별 개발은 법률도서와 법률인접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며,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인문예술, 문학,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장서개발의 방법

- 법원도서관은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 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 ① 구입 : 법원도서관의 주장서 개발 방법으로, 국내의 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법원도서관 및 각급 법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구입한다.
- ② 수증 : 비매품자료 등을 수집하며, 장서개발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환 :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수집 할 수 있다.
- ④ 납본 : 각급 법원 등이 간행물(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발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간행물 10부와 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법원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도서관이자 국가 대표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납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영인·복제 : 구입, 수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법률자료 중에서 원형보존이 요구되거나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복사·영인본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다.
- ⑥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탑재된 법률정보 중 회색문헌에 적용하며, 개발지침에 따라 수집한다.

2. 법률장서개발 세부지침

법원도서관의 주요 정보자원인 법률장서에 대한 장서개발 세부지침은 <표 7>과 같다. 세부지침은 기본원칙, 자료 유형별 세부지침, 국가별 선정 세부지침 등을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표 7> 법률장서개발 세부지침(안)

1. 기본원칙

- 법률자료는 법률의 제정(입법자료), 집행(규정, 결정자료), 해석 및 재판(판결자료) 과정과 관련하여 생산되거나 법률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참고가 되는 모든 관련 자료를 말한다.
- 법률자료는 의미와 유형에 따라 1차 법률자료와 2차 법률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 1차 법률자료란 법령정보 자체를 의미하며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판례 등이 여기에 속한다.
 - 2차 법률자료란 1차 법률자료에 대한 주석, 논평, 색인 등과 법률정보 이론 및 학계의 논문 등 연구자료를 의미한다. 법학단행본, 논문, 판결평석, 학위논문, 법률용어사전, 법률정보색인, 법률용어 시소러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 법률정보는 법률 제정·개정, 수집방법, 자료유형(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법률유관기관에서 요청하거나 활용한 자료 또는 연구자의 조사·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법률자료는 적극적으로 수집한다.
- 재판사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법률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가의 1차 법률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자료 유형별 세부지침

2.1 일반원칙

- 기술의 변화에 따라 법률 정보는 다양한 형식(마이크로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CD-ROM, 인터넷, 오디오 및 비디오 등)으로 이용 가능하다.
- 법률자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쇄 및 전자 저널, 오디오 및 비디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형식(유형)으로 수집된다.

- ① 알려진/예측된 이용자 요구
- ② 정보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이용자 요구 사항(환경)에 대한 적합성
- ③ 대체 형식(formats)의 가용성/비용
- ④ 필수 지원 장비/설비의 가용성/비용
- ⑤ 접근 용이성
- ⑥ 라이선스 계약
- ⑦ 포맷을 지원하는 기술적 역량
- ⑧ 포맷을 지원하는 도서관의 능력
- ⑨ 포맷의 수명
- ⑩ 평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계를 제공하는 전자 리소스의 기능
- ⑪ 라이프사이클, 비용 및 가치
- ⑫ 전반적인 비용 효과
- ⑬ 가독성

- 인쇄와 디지털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한다.
- 전자 형식의 도서와 저널은 호환되는 사용, 액세스 및 형식 모델로 제공되는 경우 구매한다.
- 인쇄된 자료와 전자자료 중에 수집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최신 버전 및 에디션 액세스 가능 여부
- ② 자료를 소장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액세스를 얻는 것인지
- ③ 전자 자료 라이선스 계약 가능여부
- ④ 새로운 형식은 액세스의 편리성, 사용방법, 기존 사용법과의 호환 가능성 등을 고려

2.2 도서

(1) 단행본

- 사용의 용이성, 정보의 영구적 획득, 가독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한다.
- 전문가 요구를 감안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선정하되 1종 1책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복본을 구입할 수 있다.
- 법률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같은 주제로 다양하게 발행된 자료는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저자 및 발행자의 자료를 우선 선정한다.
- 고가의 자료는 질적인 측면과 이용자 요구 빈도를 신중히 고려하여 선정한다.
- 연령별, 직렬/직업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이용계층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형평성을 맞추어서 도서를 선정한다.

(2) 참고도서

- 국내 법률 참고도서(법전, 법률용어사전, 어학사전, 백과사전, 편람, 연감, 인명정보원, 지리정보원, 색인, 초록지, 도서목록 등)은 최대한 수집한다.
- 국내 참고도서를 수집할 때는 학술적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외국 참고도서는 법률 분야에 지명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출판사의 간행물을 우선적으로 수집한다.
- 외국 참고도서는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일본 등)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업선 및 적극 수집한다.

2.3 연속간행물

- 신규로 구독할 외국학술지는 법률 관련 분야 중심으로 선정하며, 이용자의 요구 및 분야별 전문가가 추천하는 학술지를 우선으로 한다.
- 신문은 법조계에 대한 현재 트렌드 및 인식, 입법부, 법원 또는 법률 기관 등의 최근 활동, 관련 학계 및 교육을 다루고 있는 신문(예: 법률신문)을 수집한다.
 - 종이 신문은 단기적 보존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 장기 보존이 용이한 다른 형식으로 보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뉴스레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여성변호사회, 기타 전국 전문법률단체, 전국 및 지역 전문법률도서관협회가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대상으로 수집한다.
 - 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또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주제별 뉴스레터를 구독하지 않으며, 합리적 비용을 바탕으로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중요한 최신정보주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집의 가치가 낮은 법률 뉴스레터는 선택적으로 수집한다.

2.4 회색문헌

- 납본 체계를 통해 회색문헌의 저작권 등록과 저작물의 저장을 체계화 한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과 전자등록을 위한 디지털 저작물의 납본을 자동화된 새로운 방법으로 시스템을 개발한다.
 - 파일형태는 범용성이 높은 HTML, PDF, MP3 Audio Files 등을 기준으로 한다.

- ①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접수하고 처리
- ② 전자 서명 확인 후 접수 확인서 교부
- ③ 등록일 부여 후, 납본 처리
- ④ 자원 등록 번호 부여 후 인증서를 발급
- ⑤ 목록 정보 저장
- ⑥ 외부에서 DB 검색 가능도록 준비
- ⑦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 저장

- 지속적인 개발과 확장을 통해 문서 외 다양한 유형(전자저널, 웹사이트, 멀티미디어 등)의 법률정보 관련 회색문헌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법률 관련 회색문헌 납본 운영 체제는 다음과 같이 마련한다.
 - 법원도서관의 납본시스템은 보존 기능, 출판 기능, 서비스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납본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법률정보와 관련하여 납본체계를 만든다.
 - 법원도서관은 각급 법원과 상호 협력망을 구축하고 회색문헌의 납본시스템을 공유한다.
 - 법원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법률영역의 납본대상을 정리하고 납본법을 제정하여 법률분야에서는 최고의 국가 법원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2.5 비도서자료

(1) 오디오 및 비디오

- 판례공보 오디오북(비디오 콘텐츠)과 오디오 콘텐츠를 서비스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수요와 선호를 고려하여 확충 및 제작한다.
- 현재 전문가를 포함한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형식은 오디오보다 비디오를, 판례집 보다는 소송절차 안내 매뉴얼 등임을 고려한다.

- 도서관은 VHS 이하 형식을 수집하지 않는다.
- (2) 소프트웨어
 -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요청 전문가와 협의하여 특정 전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는 특정 요구에 대응하여 제한된 수량을 구입할 수 있다.
- (3) 마이크로폼
 - 법률 정보 중 비용, 공간, 영구성의 측면이 우선적이고 중요한 경우 해당 포맷을 활용하여 컬렉션을 보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2.6 전자자료

- (1) 일반원칙
 - 전문가 및 연구자들은 전자적으로 정보를 접근하기를 기대함에 따라 전자자료 수집을 확대한다.
 - 법령집, 판례집, 법률주석서, 교과서, 법률 잡지, 학위논문 등 모든 법령정보에 대하여 전자정보를 희망함에 따라 모든 영역의 전자자료 확보가 요구된다.
- (2) 자료 유형별 선정 지침
 - ① 전자책
 - EBSCOhost eBook Collection, ProQuest Ebook Central 등을 구독한다.
 - 전자책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콘텐츠 유형, 선호도, 영구 접속, 플랫폼 사용성, 비용, 도서관 간 공유(디지털 권한 관리), 인쇄 및 다운로드 옵션, 전자책 접근에 대한 법률 커뮤니티 관심 등이 포함된다.
 - ② 전자저널
 - 법률 논문은 법률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평과 분석을 제공한다.
 - 법률 관련 전자저널은 국내외의 주요 법률 간행물에 출판된 학술 저작물, HeinOnline, LEGAL RESOURCES INDEX & CURRENT LAW INDEX에 색인된 저널 등을 우선 수집(구독)하여 국내외의 주요 법률 저널을 실시간 서비스한다.
 - Lexis, Westlaw, Hein 및 Bloomberg와 같은 전자저널을 구독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③ 인터넷 자료
 - 수집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 선정요소 | 구체적인 내용 및 선정 요소에 대한 설명 |
|------|--|
| 권위 | 저자, 소속기관, 제작기관, 지원기관의 권위, 평판, 신뢰도 |
| 정확성 | 내용의 정확성 |
| 최신성 | 제작일, 갱신일, 갱신빈도 |
| 목적 | 자료 제작의 목적, 이용 대상자의 수준 |
| 구조 | 자료가 체계화되어 있는 정도 |
| 디자인 | 화면 구성요소의 배치, 색채,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자료의 적절한 조화 등 |
| 링크사항 | 링크의 수준과 범위 |

3. 국가별 선정 세부지침

3.1 일반원칙

- 외국어 법률자료는 이용자의 선호도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선정한다.
- 외국어 법률자료 개발을 위해 현재 요구와 미래의 예측을 분석한다.
- 영어 이외에 언어자료의 선정 및 개발은 관내 이용 외국인, 이용자 요청, 대출 통계, 그리고 해당 언어 자료 요구 분석 결과에 근거해서 선정한다.
- 재판사무지원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자료, 참고자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선정한다.

3.2 세부기준

- 국내에서 출판된 법률자료는 모든 단행본 및 정기간행물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한다. 단, 예외적으로 이용대상자가 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수집에서 제외한다.
- 국내 법률정보 및 관련 자료는 최신자료와 소급자료로 대별하여 수집한다.
 - 최신자료는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소급자료는 구입과 수증을 통한 원본 입수를 우선하되, 잠재적 이용가치를 기준으로 영인·복제, 디지털화 등 매체변환을 병행한다.
-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주요국가의 법률자료는 인쇄자료와 전자자료 모두를 수집하고, 그 외의 국가는 수집 가능한 자료를 우선으로 수집한다.
 -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중심의 외국 법률자료 수집에서 수집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중국·대만,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법률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외국 법률정보 및 관련 자료는 해외 주요국가의 최고법원 및 하급심법원, 전문법원, 법조인 연수원, 법률 및 로스쿨 국제연구기관, 로스쿨 및 법학대학 등에서 생산된 법률정보에 방점을 두고 수집한다.
- 다양한 국가의 법률장서를 망라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장서 대비 국내서와 국외서 중 사용언어가 영어, 독일어, 일본어인 도서의 총 비율은 85%를 상회하지 아니한다.
- 법률 전문가 및 연구자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이탈리아, 베트남,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 다양한 언어 및 국가의 법률장서를 확충한다.

4. 국가장서 보존관리 지침

4.1 보존관리지침

- 법원도서관이 소장하는 국가장서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를 불문하고 제공서비스에 방점을 두는 가운데 보존관리를 강화한다.
- 법원도서관 외에 고등법원 등에 거점 보존 서고를 두어 장서를 보존관리 한다.
- 특히 법률정보 보존의 경우, 자연적 열화와 인위적 파오손에 따른 사후 수선복원보다 사전 예방조치를 우선으로 한다.
- 법률정보 및 관련 자료는 형태서지와 내용가치 측면의 중요성을 기준으로 보존·복원처리, 소독·탈산처리, 매체변환(영인·복제, 디지털화, 마이그레이션)을 통하여 후대를 위한 보존력과 접근·이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
- 법률정보의 보존 할 때는 단행본 도서, 판례, 연구관보고서, 학술지 논문 등 법률정보의 원문DB구축을 원칙으로 한다.
- 법원도서관이 동일한 내용의 법률정보를 다양한 버전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인쇄본, 오프라인 자료, 온라인 디지털 파일단위의 순으로 우선 보존한다. 다만, 각각의 버전을 함께 보존해야 할 때는 '1종 1책 보존주의'를 지향한다.

4.2. 폐기·제적 지침

- 법원도서관이 보존하는 국가장서는 폐기·제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 ① 수증자료 중에서 오래된 자료, 비이용 자료, 복본 등
 - ② 천재지변으로 망실되었거나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오손된 자료
 - ③ 정보기술 변화로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
 - ④ 기타 관장이 폐기지침으로 정하는 자료
- 법원도서관이 국가장서를 폐기·제적할 때는 반드시 영인·복제, 디지털화, 포맷변환 등의 방식으로 대체버전을 확보한다.
- 그러나 원본이 형태서지적 측면에서 유일본이거나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원형보존 및 복원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 법원도서관 외에 각급 법원 도서관의 장서는 폐기·제적 할 수 있다. 다만, 각급 법원의 경우는 규모에 따른 차등적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 층위별 법원 구분: 고등법원→지방법원→사무국 설치 지원→사무국 미설치 지원
 - 폐기·제적 대상 자료 및 범위를 층위별로 적용.

다음의 장서개발정책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적절한 환경관리(서고 개보수, 적정 온습도 유지, 재해대책), 인위적 파오손의 예방과 이용 교육, 파오손자료의 재제본과 복원, 종이매체의 훈증소독과 탈산처리, 복사(영인)본 준비 등을 통해 장서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관리한다. 또한,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하고, 폐기 및 제적되는 모든 법률 관련 자료는 보존서고의 복본 소장, 원문DB 구축이 선행된 후 실시한다.

IV. 결론 및 제언

법원도서관은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법률 관련 전문가, 일반 이용자를 위한 장서를 집중적 및 전략적으로 개발, 보존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법학 관련 도서관

과 국가 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분석하여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적 원칙과 지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개발(안)과 세부 내용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원도서관의 비전은 1) 각국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한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 2) 법조 실무계와 학계중보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로 설정하였다.

둘째,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5가지 기본방향은 1)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2)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3)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4)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5)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로 제시하였다.

셋째,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 개발, 국가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법률자료 개발,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에 우선권을 두는 법률자료의 매체별 유형 등 10가지로 제시하였다.

넷째, 기본지침은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지침의 경우 법률장서개발과 일반장서개발로 대별한 후에 다시 기본원칙,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 국가별 등으로 구분하였다.

다섯째, 집서수준은 보존수집, 혼합수집, 보완수집, 분담수집인 5가지 수집단계를 우선순위로 적용하여 장서를 개발하며,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한다.

이러한 정책문서에 기반한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을 통해 체계적 또는 전략적 장서개발을 정당화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도서관이 법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정보서비스의 전문성과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외에도 법률전문도서관들의 장서개발정책 수립 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장서개발정책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2014).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3), 27-53.
- 곽승진, 노영희, 장인호, 김정택, 민영태, 신영지, 곽우정, 정덕영 (202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연구. 서울: 법원도서관.
- 곽철완 (2015). 신학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1), 101-134.
- 박희숙 (2004). 전문도서관의 전자자료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35(1), 29-49.
- 송이 (2012). 대학도서관 전자책 장서개발 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유미, 박옥남 (2019). 장서개발관리 분야 최근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6(2), 105-131.
- 윤희윤 (2007).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 윤희윤 (2009). 공공도서관 장서개발의 정론과 역설.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22.
-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147.
-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 장덕현, 서태설 (2009). 디지털 장서개발정책 기본요소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3), 97-117.
- 장덕현, 이연옥, 윤희윤 (2014).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모형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2), 179-203.
- 장일경 (2000). 대학도서관의 전자자료 장서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ang, Deok-hyun (2011). The question of intellectual freedom in the development of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65-182.
- Jang, Deok-hyun & Seo, Tae-seol (2009). A study on the fundamental elements of digital book development polic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3), 97-117.
- Jang, Deok-hyun, Lee, Yeon-ok, & Yoon, Hee-yoon (2014). A study on a model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libraries: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National Library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2), 179-203.
- Jang, Il-kyung (2000).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Electronic Materials in the University Librar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ang, Eun-young (2014). Current status and tasks of book development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3), 27-53.
- Kwak, Cheol-wan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theological university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1), 101-134.

- Kwak, Seung-jin, Noh, Younghee, Jang, In-ho, Kim, Jung-taek, Min, Young-tae, Shin, Youngji, Kwak, Woo-jeong, & Jeong, Deok-young (2021). A Study on the Library Development Policy of the Court Library. Seoul: Court Library.
- Lee, Sun-hee & Yoo, Soo-hyun (2008).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trends of Digital Jangseo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4), 125-147.
- Park, Hee-sook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policy of electronic materials in specialized libraries. *Information Management Research*, 35(1), 29-49.
- Shin, Yumi & Park, Oknam (2019). A study on the analysis of recent research trends in the long book development management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2), 105-131.
- Song, Yi (2012).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Books in University Libraries.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Yoon, Hee-yoon (2007). Methods and strategies for developing digital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79-99.
- Yoon, Hee-yoon (2009). The theory and paradox of th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y book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22.

[부록 1]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안)

〈표 8〉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안)

I.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1. 법원도서관의 사명과 책무

- 1989년에 개관한 법원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재판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를 수집·정리·보존·편찬·발간하며, 도서관자료 및 사법자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서관 봉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 법률정보의 확산 및 법률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은 물론, 법마루를 통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법문화 및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의 출현, 지식정보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법원도서관은 전통적인 도서 열람·대출 위주의 서비스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 법원 및 법학 분야에서 생성되고 있는 각종 재판자료와 법률문헌 등 법률 관련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 활성화를 제고한다.

2. 장서개발정책의 목적

- 장서개발정책은 도서관의 목표, 이용자의 요구, 그리고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서개발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의하여 자료를 의도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의사결정과정을 규정한 문서이다.
- 법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은 법원도서관의 균형 잡힌 장서 수집 및 관리, 보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 기본지침, 세부지침을 성문화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 법원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현재의 장서수준 및 미래의 입수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되, 빠른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한다.

3.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가.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책무 중심의 장서개발

-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를 지원하는 국내 최고 법률전문도서관이자 재판사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 이용자인 재판활동을 수행하는 판사, 법조 직역 종사자, 법률조사·연구자 등의 이용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 이에 각종 법률자료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수집과 법률정보 제공의 역할 수행을 중심으로 법원도서관의 핵심적 사명에 적합한 장서를 수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장서개발

- 법조 실무계와 학계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법률·재판정보센터로서의 역할에 부합하는 장서개발을 해야 한다.
- 특히, 법마루는 대국민서비스의 허브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장서뿐만 아니라 일반도서를 포괄하여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장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 변화하는 시대 및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장서개발

- 시대 변화 및 정보환경 변화와 정보매체의 다양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한다.
- 최근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 포스트 코로나 등의 시대변화와, 첨단정보기술과 언택트 특성 등을 반영한 장서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전자자료의 빠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전자자료 개발정책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은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으로 나누고, 세부지침은 환경변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갱신·유지해야 한다.

라.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주제별·언어별 장서개발

- 법원도서관은 국내 대표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망라적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 그러나 법원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장서수준 및 미래의 입수지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주제별·언어별 장서수집수준을 정의하여 법원도서관의 장서 특성을 강조하고, 장서개발의 효율화를 기한다.

마. 일관성과 체계성 기반 자료 수집·보존·폐기 장서 개발

- 법원도서관의 장서를 일관성과 체계성의 원칙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유기체로 진화시키기 위해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을 자료 수집·보존·폐기 업무의 확고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II.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원칙

1.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 법원도서관이 법률자료와 일반자료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기본 지침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① 법원도서관의 모든 장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정보를 개발하여 문헌으로 수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의 요구 및 이용행태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유용성과 이용가능성을 동시에 증시하는 방향으로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 ② 법원도서관 장서 개발 시에는 공정성, 평등성을 기반으로 사상과 이념, 정파와 정치적 성향, 종교와 신념, 인종과 국적, 신분과 직업 등의 편향성을 차단할 수 있다.
- ③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대표도서관이자 국가법률전문도서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법률자료 개발에 주력하여야 한다. 한편 대국민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법률문화 창달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일반자료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
- ④ 법원도서관이 법률자료를 개발할 때 외국 법률자료는 구입 또는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예산을 고려하여 '선택-집중'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⑤ 법원도서관이 개발할 법률자료의 매체별 유형은 인쇄자료보다 전자자료(디지털 파일)에 우선순위를 둔다. 자료예산의 한계, 접근·검색의 편의성, 입수·이용의 신속성 등을 감안하면 법률정보를 생산·유통시키는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 및 디지털 아카이빙 전략이 바람직하다.
- ⑥ 법원도서관이 미소장 과거자료를 개발할 때는 다양한 방법(구입, 수증요청, 복사·영인, 마이크로화, 디지털화 등)을 적용하되, 시대사조와 원격이용 행태를 감안하여 디지털화 전략을 우선으로 한다.
- ⑦ 법원도서관의 법률자료 개발전략은 대법원 및 각급 법원의 법률정보 수요도를 기반으로 법률 도서에 중점을 두고 개발하되 10개 주류(총류-역사) 중에서 사회과학(사회, 경제, 정치, 법률, 행정과 군사학, 사회복지, 교육, 상업과 무역), 과학기술, 예술, 문학, 역사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 ⑧ 법원도서관은 국가 대표 법률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입과 수증, 복제와 영인, 다운로드 외에 법률정보 수집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교환 등의 방식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 ⑨ 법원도서관의 대중용 일반자료 개발은 구입 및 수증수집에 주력하며, 외국자료는 선별적으로 구입한다.
- ⑩ 법원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된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근거로 법률자료 및 일반자료 수집에 주력하되, 각각의 세부지침을 구체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장서개발에 적용한다.
- ⑪ 법원도서관은 세부지침을 구체화한 실무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각 열람실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대법원열람실 및 각급 법원 도서관실은 재판사무지원 역할을, 법마루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법률문화 발전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함을 고려하여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장서개발의 대상 및 범위

- 법원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하는 '자료', '정보자료', '정보자원', '지식정보'는 호환적인 용어이며, '법률정보'와 '법률자료', '일반자료'와 '대중자료'는 각각 동의어로 간주하여 호환적인 용어로 사용한다.
- 이를 전제로 장서개발 대상을 수집방법, 자료유형, 수록매체, 언어와 생산주체, 주제로 나누어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 수집방법별 개발은 국내 자료에 구입, 수증, 교환, 소급 법률자료에 복사·영인 제작, 외국 법률정보에 구입 및 라이선스 확보, 인터넷 정보자원에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수집한다.
- 자료유형별 개발은 도서, 연속간행물, 회색문헌, 웹DB(전자잡지, 전자도서 포함), 디지털 파일 등으로 구분하고 법마루 도서에 한하여 일반도서, 참고자료, 대중잡지(신문 포함), 시청각자료 등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 수록매체별 개발은 인쇄자료, 시청각 등 특수자료, 전자자료(상용 서지·원문 DB와 패키지형 전자잡지, 전자책, 디지털 파일)를 대상으로 한다.
- 언어별 및 생산주체별 개발은 법률정보에 국한하며, 전자는 영어권, 독일어권, 프랑스어권, 스페인어권, 한자권, 북한, 기타 등의 자료를, 후자는 국의 법무부, 대법원 및 연방법원, 연방행정법원, 국제기구, 대륙별 국가연합체, 주요 국제 민간기구, 주요 국가를 대표하는 주제별 단체·연구기관의 법률과 관련된 공공간행물, 보고서, 법령·통계자료, 학술대회자료, 박사논문 등을 대상으로 한다.
- 주제별 개발은 법률도서와 법률인접분야를 중심으로 개발하며, 일반도서는 사회과학, 인문예술, 문학,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3. 장서개발의 방법

- 법원도서관은 국내 자료의 구입, 수증, 교환, 납본, 소급 자료의 복사·영인 제작, 인터넷 정보자원의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등을 적용하여 국가장서를 개발한다.
- ① 구입 : 법원도서관의 주 장서 개발 방법으로, 국내의 자료를 구입방식으로 수집하며, 법원도서관 및 각급 법원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구입한다.
- ② 수증 : 비매품자료 등을 수집하며, 장서개발지침 및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나 복본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환 :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여 수집 할 수 있다.
- ④ 납본 : 각급 법원 등이 간행물(출판물)을 발간할 때에는 법원도서관규칙 제14조에 의거하여 발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간행물 10부와 간행물의 내용을 수록한 전자파일을 법원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 법원도서관은 사법부 중앙도서관이자 국가 대표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근거한 납본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영인·복제 : 구입, 수증 등의 방식으로 수집한 법률자료 중에서 원형보존이 요구되거나 내용적 가치가 우수함에도 파오손이 심한 경우에는 복사·영인본으로 제작 또는 변환한다.
- ⑥ 다운로드와 디지털 아카이빙 :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 탑재된 법률정보 중 회색문헌에 적용하며, 개발지침에 따라 수집한다.

4.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 법원도서관은 다음의 5가지 수집단계를 우선순위로 적용하여 장서를 개발하며,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국가), 기대수명에 따라 우선순위를 달리한다.
 - ① 보존수집(Archiving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법률전문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자료의 완벽한 보존을 전제로 이용의 편의성과 후세전승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따라서 장서를 개발할 때는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정보의 부존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작권 강화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을 극대화한다.
 - ② 완전수집(Perfect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정보자료 중심의 국가지식문화 유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특히 법률과 관련한 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한다.
 - ③ 혼합수집(Hybrid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방대한 분량의 아날로그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인터넷 정보유통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정보매체에 대한 선호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 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반자료와 온라인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 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한다.
 - ④ 보완수집(Back-up Collection): 법원도서관이 구입, 수증, 교환, 납본 등의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완전하게 수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료의 유형이나 주제에 따라서는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의 보충, 훼손자료의 수선·복원·교체·매체변환 등을 통하여 보완한다.
 - ⑤ 분담수집(Sharing Collection): 법원도서관은 국가수준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법률자료, 고가자료, 희색문헌, 온라인자료 등을 분담형태로 개발함으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자료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한다.
-